

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27,207,088	18,816,213
일반회계		602,621,383	18,078,641
특별회계		24,585,705	737,571
기타특별회계		24,585,705	737,57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22,810	15,684
	건축진흥특별회계	370,000	11,1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0	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086,220	182,587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360,810	70,82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00,400	30,012
	수질개선특별회계	61,200	1,8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3,796	19,614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23,614	3,70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98,986	200,970
	상수도특별회계	6,677,869	200,33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45,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